

학교법인 대양학원

2024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 | | | |
|------|----|-------|----|
| 이사정수 | 8인 | 재적이사수 | 8인 |
| 감사정수 | 2인 | 재적감사수 | 2인 |

1. 일 시 : 2024.10.17.(목) 10:00 ~ 11:40 [회의소집통보일 : 2024.10.14]

2. 장 소 : 법인사무국 회의실 (세종사이버대학교 왕건관 3층)

3. 출석현황

○ 참석임원

- 이 사 : 최세모, 박찬혜, 문두식, 이요섭, 김덕영, 이석규, 이환호, 주대성 (이상 8명)
- 감 사 : 김홍범, 김대웅 (이상 2명)

○ 불참임원

- 이 사 : (없음)
- 감 사 : (없음)

4. 안 건

제1의안 : 법인 정관 개정의 일

제2의안 : 세종대학교 교직원 보수 관련 규정 개정의 일

제3의안 : 교직원 인사의 일

5. 회의내용

최세모 이사장은 개회를 선언하기에 앞서,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에 따라 신임 김홍범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을 안내하다. 이어 최세모 이사장은 김홍범 감사의 약력을 소개한 후, 이사회의 감사 선임 결정에 응해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고, 법인 및 산하학교의 발전에 큰 힘과 지혜를 보태줄 것을 당부하다. 참석임원들은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하다.

최세모 이사장은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법인 정관 제32조 및 제34조에 의거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제1의안 : 법인 정관 개정의 일

최세모 이사장은 법인 정관 개정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다. 최세모 이사장은 세종대학교에서 법인 정관 개정(안)을 제청하였으며, 관련 보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세종대학교 홍우영 부총장이 대기 증임을 안내한 후, 간사로 하여금 홍우영 부총장을 입장하게 하다. 이에 홍우영 부총장이 입장하여 정관 개정 사유 등 주요내용을 기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하다. 참석임원들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홍우영 부총장은 이에 각각 답변하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음을 확인한 최세모 이사장은 홍우영 부총장을 퇴장하게 한 후, 법인 정관 개정(안)에 대한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구하다. 참석이사들은 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이석규 이사의 동의와 박찬혜 이사의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법인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의 결하다.

제2의안 : 세종대학교 교직원 보수 관련 규정 개정의 일

최세모 이사장은 세종대학교 교직원 보수 관련 규정 개정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다. 최세모 이사장은 금번 안건에 대한 보고 역시 홍우영 부총장이 직접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간사로 하여금 홍우영 부총장을 재 입장하게 하다. 홍우영 부총장은 안건 보고를 통하여 세종대학교 교직원 보수 관련 규정 개정(안)의 개정 취

지, 근거 등 주요내용을 기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하다. 참석임원들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홍우영 부총장은 이에 각각 답변하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음을 확인한 최세모 이사장은 홍우영 부총장을 퇴장하게 한 후, 세종대학교 교직원 보수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구하다. 참석이사들은 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이석규 이사의 동의와 이환호 이사의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세종대학교 비전 임교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불임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 세종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은 불임과 같이 수정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다.

제3의안 : 교직원 인사의 일

최세모 이사장은 교직원 인사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다. 간사는 안건보고를 통하여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교직원 인사를 제청하였음을 설명한 후, 각 인사 제청 사항을 기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하다. 최세모 이사장은 교직원 인사에 대한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구하다. 참석이사들은 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박찬혜 이사의 동의와 김덕영 이사의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교직원 인사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다.

보고사항 : 법정 의무교육

- I.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보고 (청탁금지법 제19조에 따라 교육 실시)
- II.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보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교육 실시)

※ 회의록 비공개 : 최세모 이사장은 금일의 회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설명한 후, 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2의안 불임의 발표, 제3의안의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할 것을 제안하다. 이에 이요섭 이사의 동의와 문두식 이사의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비공개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다.

※ 회의록 간서명 : 이석규 이사, 이환호 이사, 김대웅 감사 (이상 3명)

6. 폐회선언

- 차기 이사회 : 일정확정 후 별도 통보 예정

이사회 회의록 작성자 간사 법인사무국 사무국장 박 병 준
 서기 법인사무국 법인팀장 장 덕 훈
 2024.10.17.

| | | | |
|-----|-----------|-----|-------|
| 의 장 | 학교법인 대양학원 | 이사장 | 최 세 모 |
| 이 사 | 박 찬 혜 | 이 사 | 문 두 식 |
| 이 사 | 이 요 섭 | 이 사 | 김 덕 영 |
| 이 사 | 이 석 규 | 이 사 | 이 환 호 |
| 이 사 | 주 대 성 | 감 사 | 김 흥 범 |
| 감 사 | 김 대 웅 | | |

1. 교직원 인사 승인내역

가. 세종대학교

1) 전임교원 신규임용 취소 대상자 명단 (1명)

| 연번 | 소속 | 직명 | 성명 | 임용취소기간 | 비고 |
|----|---------|-----|----|-----------------------|-----|
| 1 | 소프트웨어학과 | 조교수 | | 2024.09.01~2026.08.31 | 정년제 |

2) 전임교원 연구년 대상자 명단 (19명)

| 연번 | 소속 | 직명 | 성명 | 연구년 신청기간 | 연구기관 | 비고 |
|----|-------------|-----|----|----------------------------|--|----|
| 1 | 물리천문학과 | 교수 | | 2025.03.01~2025.08.31(6개월) | 고등과학원(KIAS) 및 Institut Charles Sadron | |
| 2 | 바이오융합공학전공 | 교수 | | 2025.03.01~2025.08.31(6개월) | 연세 정밀의학 유전체 연구소 | |
| 3 |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 교수 | | 2025.03.01~2025.08.31(6개월) | 쥬더기반 생명공학센터 | |
| 4 | 전자정보통신공학과 | 교수 | | 2025.03.01~2025.08.31(6개월) | LIG 넥스원 | |
| 5 | 컴퓨터공학과 | 교수 | | 2025.03.01~2025.08.31(6개월) | LIG 시스템 | |
| 6 | 행정학과 | 부교수 | | 2025.03.01~2026.02.28(1년) | 한국수출입은행 미국 워싱턴 사무소 | |
| 7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교수 | | 2025.03.01~2026.02.28(1년) | 한림대학교 건강과뉴미디어 연구센터 | |
| 8 | 외식경영학전공 | 교수 | | 2025.03.01~2026.02.28(1년)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Dept. of Hotel, Restaurant & Institution Management) | |
| 9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 교수 | | 2025.03.01~2026.02.28(1년) | Binghamton University(Integrated Electronic Engineering Center) | |
| 10 | 컴퓨터공학과 | 교수 | | 2025.03.01~2026.02.28(1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
| 11 | 건축학과 | 교수 | | 2025.03.01~2026.02.28(1년) | 한국도시설계학회 | |
| 12 | 지능형드론융합전공 | 부교수 | | 2025.03.01~2026.02.28(1년) | 쥬에어빌리티 | |
| 13 | 나노신소재공학과 | 교수 | | 2025.03.01~2026.02.28(1년) | 국립산림과학원 | |
| 14 | 나노신소재공학과 | 교수 | | 2025.03.01~2026.02.28(1년) | 주식회사 테스 | |
| 15 | 나노신소재공학과 | 교수 | | 2025.03.01~2026.02.28(1년) | 충남대학교 에너지융합연구소 | |
| 16 | 물리천문학과 | 교수 | | 2025.03.01~2026.02.28(1년) | 성균관대학교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 |
| 17 | 물리천문학과 | 부교수 | | 2025.03.01~2026.02.28(1년) | SKA 본부, 맨체스터대학교 조드헬뱅크 전파 천문대 | |
| 18 |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 교수 | | 2025.03.01~2026.02.28(1년) | University of Delaware(Dep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 |
| 19 | 경영학부 | 조교수 | | 2025.03.01~2026.02.28(1년) |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 |

3) 전임교원 면직 대상자 명단 (6명)

| 연번 | 소속 | 직명 | 성명 | 면직일자 | 면직사유 | 비고 |
|----|---------------|-----|----|------------|------|------|
| 1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조교수 | | 2024.08.31 | 의원면직 | 정년제 |
| 2 | 나노신소재공학과 | 교수 | | 2024.08.31 | 의원면직 | 정년제 |
| 3 | 컴퓨터공학과 | 조교수 | | 2024.08.31 | 의원면직 | 연구중점 |
| 4 | 우주항공공학전공 | 조교수 | | 2024.09.13 | 의원면직 | 연구중점 |
| 5 |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 조교수 | | 2024.09.19 | 의원면직 | 연구중점 |

3/6

| 연번 | 소속 | 직명 | 성명 | 면직일자 | 면직사유 | 비고 |
|----|-------|-----|----|------------|------|------|
| 6 | 시로봇학과 | 조교수 | | 2024.09.19 | 의원면직 | 연구중점 |

4) 비전임교원 신규임용 대상자 명단 (2명)

| 연번 | 소속 | 직명 | 성명 | 임용기간 | 비고 |
|----|-----------|------|----|-----------------------|----|
| 1 | 경제학과 | 대우교수 | | 2024.11.01~2026.02.28 | |
| 2 | 호텔관광경영학전공 | 대우교수 | | 2024.11.01~2026.02.28 | |

5) 비전임교원 신규임용 취소 대상자 명단 (2명)

| 연번 | 소속 | 직명 | 성명 | 임용취소기간 | 비고 |
|----|-------------|------|----|-----------------------|----|
| 1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초빙교수 | | 2024.09.01~2025.08.31 | |
| 2 | 경영학부 | 초빙교수 | | 2024.09.01~2025.08.31 | |

6) 비전임교원 면직 취소 대상자 명단 (1명)

| 연번 | 소속 | 직명 | 성명 | 취소 면직일자 | 비고 |
|----|----------|----------|----|------------|----|
| 1 | 양자원자력공학과 | 산학협력중점교수 | | 2024.08.31 | |

7) 비전임교원 재임용 대상자 명단 (3명)

| 연번 | 소속 | 직명 | 성명 | 임용기간 | 비고 |
|----|-----------|----------|----|-----------------------|----|
| 1 | 양자원자력공학과 | 산학협력중점교수 | | 2024.09.01~2025.08.31 | |
| 2 | 기후에너지융합학과 | 석좌교수 | | 2024.12.01~2026.02.28 | |
| 3 | 컴퓨터공학과 | 산학협력중점교수 | | 2025.01.01~2026.02.28 | |

8) 비전임교원 면직 대상자 명단 (3명)

| 연번 | 소속 | 직명 | 성명 | 면직일자 | 면직사유 | 비고 |
|----|----------|------|----|------------|------|----|
| 1 | 식품생명공학전공 | 대우교수 | | 2024.08.10 | 의원면직 | |
| 2 | 나노신소재공학과 | 연구교수 | | 2024.08.31 | 의원면직 | |
| 3 | 경제학과 | 명예교수 | | 2024.10.31 | 직명변경 | |

9) 직원 면직 대상자 명단 (1명)

| 연번 | 성명 | 소속 | 직위 | 재직기간 | 면직일자 | 비고 |
|----|----|-------|----|-----------------------|------------|------|
| 1 | | 국제교육원 | 직원 | 2018.09.01~2024.08.20 | 2024.08.20 | 의원면직 |

나. 세종사이버대학교

1) 강사 임용취소 대상자 명단 (2명)

| 연번 | 소속 | 직명 | 성명 | 구분 | 임용취소 기간 | 임용취소 사유 |
|----|--------|----|----|------|-----------------------|---------|
| 1 | 한국어학과 | 강사 | | 신규임용 | 2024.09.01~2025.08.31 | 임용 포기 |
| 2 | 정보보호학과 | 강사 | | 임용연장 | 2024.09.01~2025.08.31 | 재임용 포기 |

2) 비전임교원 신규임용 대상자 명단 (2명)

| 연번 | 소속 | 직명 | 성명 | 임용기간 |
|----|---------|------|----|-----------------------|
| 1 | 소방행정학과 | 초빙교수 | | 2024.11.01~2026.02.28 |
| 2 | 공예디자인학과 | 초빙교수 | | 2024.11.01~2026.02.28 |

1 - 2

4/6

1 |

12 - 1/6

2. 학교법인 대양학원 정관 개정 승인내역 (신·구조문대비표)

| 개 정 전 | 개 정 후 |
|--|---|
| <p>제91조(학장·대학원장) ①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에는 국제 업무만을 담당하는 대학원장을 따로 둘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④각 단과대학에는 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으로 보하는 부학장을, 각 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으로 보하는 부원장을 둘 수 있다.</p> <p><신설></p> | <p>제91조(학장·대학원장) ①----- -- 각 대학원에 원장을 둔다.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일반대학원장은 각 대학원의 정원조정 등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총장에게 건의한다.</p> <p>⑤각 단과대학에는 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으로 보하는 부학장을, 각 대학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으로 보하는 부원장을 둘 수 있다.</p> |
| | <p>부 칙</p> <p>이 정관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

3. 세종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 승인내역 (신·구조문대비표)

| 개 정 전 | 개 정 후 |
|---|---|
| <p>제8조(교원 보직수당) ①교원이 보직에 임명된 경우 [별표3]에 따른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둘 이상의 보직을 겸한 경우 금액이 가장 큰 하나의 보직수당만을 지급한다.</p> <p>②~③ (생략)</p> | <p>제8조(교원 보직수당) ①-----[별표3]-----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 <p>부 칙</p> <p>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2. (경과조치) 이 규정 제8조에 따른 [별표3]은 보직 임면일부터 적용한다.</p> |

【별표3】

5 / 6 | 1 | 16 / 16

4. 세종대학교 비전임교원 보수 규정 개정 승인내역 (신·구조문대비표)

| 개정전 | 개정후 |
|---|---|
| <p>제7조(석좌교수) ①석좌교수의 연봉은 주당 강의시간, 연구 및 대외협력활동 등의 업무를 고려하여 <u>연간 최대 3,600만원 이내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학과 소속인 경우 최대 4,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 <p>제7조(석좌교수) ①----- ----- <u>연간 최대 3,600만원 이내(계약학과 소속인 경우 최대 4,200만원 이내)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봉 상한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원연봉책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
| <p><신설></p> | <p>제13조(명예특임교수) 명예특임교수는 [별표2]에 따른 우수학술활동수당을 지급한다.</p>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2. (경과조치) 2024년 9월 1일 이후에 지급된 보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p> |

【별표2】

6 / 6 | '] 19'1/6